

별지 1-1. (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비율이 2.1:1일 경우 기준)

◇ 세부내역(1일 기준) ※ 월 입소비 = 당월 이용한 일수 × 1일 비용

구 분		비용(체크)	금액(원)	구분	비용(체크)	금액(원)	내역
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보험 부담비용	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(92%)	1등급()	85,624	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(88%)	1등급()	81,902	1 일 당
		2등급()	79,433		2등급()	75,979	
		3등급()	75,017		3등급()	71,755	
		4등급()	75,017		4등급()	71,755	
	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(90%)	1등급()	-	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(80%)	1등급()	74,456	
		2등급()	-		2등급()	69,072	
		3등급()	-		3등급()	65,232	
		4등급()	-		4등급()	65,232	
입소자 개인부담 비용	요양급여 비용 - 경감(8%)	1등급()	7,446	요양급여 비용 - 경감(12%)	1등급()	11,168	1 일 당
		2등급()	6,907		2등급()	10,361	
		3등급()	6,523		3등급()	9,785	
		4등급()	6,523		4등급()	9,785	
	요양급여 비용 - 경감(10%)	1등급()	-	요양급여 비용 - 경감(20%)	1등급()	18,614	
		2등급()	-		2등급()	17,268	
		3등급()	-		3등급()	16,308	
		4등급()	-		4등급()	16,308	
	식사재료비(1일 2회 간식포함) ()					2,500	1끼당
	직원가족 입소자 식사재료비(1일 2회 간식포함) ()					1,500	

※ 정확한 금액은 매월 고지되는 장기요양급여이용명세서 참조

◇ 병원입원이나 외박 시 입소이용료 본인부담 비용 세부내역

구 분	금 액(%)
입원 시(입원 당일부터 10일까지)	★ 1일 개인부담금액 50%만 부담
외박 시(외박 당일부터 10일까지)	
낮 12시 전 입소나 낮 12시 후 퇴소 시	1일 개인부담금액 100% 부담
낮 12시 후 입소나 낮 12시 전 퇴소 시	1일 개인부담금액 50% 부담
※ 식재료비는 시설 내에서 식사한 매 끼를 계산하여 적용	

별지 1-2 (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비율이 2.3:1일 경우 기준)

◇ 세부내역(1일 기준) ※ 월 입소비 = 당월 이용한 일수 × 1일 비용

구 분		비용(체크)	금액(원)	구분	비용(체크)	금액(원)	내역
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보험 부담비용	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(92%)	1등급()	81,438	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(88%)	1등급()	77,898	1 일 당
		2등급()	75,550		2등급()	72,266	
		3등급()	71,337		3등급()	68,235	
		4등급()	71,337		4등급()	68,235	
	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(90%)	1등급()	-	경감장기 요양급여 비용(80%)	1등급()	70,816	
		2등급()	-		2등급()	65,696	
		3등급()	-		3등급()	62,032	
		4등급()	-		4등급()	62,032	
입소자 개인부담 비용	요양급여 비용 - 경감(8%)	1등급()	7,082	요양급여 비용 - 경감(12%)	1등급()	10,622	1 일 당
		2등급()	6,570		2등급()	9,854	
		3등급()	6,203		3등급()	9,305	
		4등급()	6,203		4등급()	9,305	
	요양급여 비용 - 경감(10%)	1등급()	-	요양급여 비용 - 경감(20%)	1등급()	17,704	
		2등급()	-		2등급()	16,424	
		3등급()	-		3등급()	15,508	
		4등급()	-		4등급()	15,508	
	식사재료비(1일 2회 간식포함) ()					2,500	1끼당
	직원가족 입소자 식사재료비(1일 2회 간식포함) ()					1,500	

※ 정확한 금액은 매월 고지되는 장기요양급여이용명세서 참조

◇ 병원입원이나 외박 시 입소이용료 본인부담 비용 세부내역

구 분	금 액(%)
입원 시(입원 당일부터 10일까지)	★ 1일 개인부담금액 50%만 부담
외박 시(외박 당일부터 10일까지)	
낮 12시 전 입소나 낮 12시 후 퇴소 시	1일 개인부담금액 100% 부담
낮 12시 후 입소나 낮 12시 전 퇴소 시	1일 개인부담금액 50% 부담
※ 식재료비는 시설 내에서 식사한 매 끼를 계산하여 적용	

별지 2.

◇ 입소 시 비급여 항목 내역

항 목	내 역				비 용
식재료비 ※ 간식비는 식재료비의 20~30% 전후로 구입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식은 밥, 국 3찬 이상 매일 식단에 따라 면류나 탕 종류로 대체되거나 추가됨. - 특히 조식과 중식, 중식과 석식 간의 간식 (과일, 빵, 떡, 찐 감자나 계란류 등) 포함. 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식 당 2,500원 - 하루 7,500원 - 기초수급권자는 무료 - 간식비는 식재료비의 20~30%이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위관영양식으로 이엔솔브 등 경구유동식 지급. - 조·중·석식에 경구식 1회 2팩 분량 정도 지급. - 정규식사 외에도 조식과 중식, 중식과 석식 간에도 1팩 또는 두유, 특수경관식 지급. - 이엔솔브 이외에 타 제품 지급 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음 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팩 당 500원 + 특수 팩 1당 900원 (이엔솔브 300TF 기준) - 하루 4,800원 (500×6팩+ 900×2팩) - 기초수급권자는 무료 - 간식비는 식재료비의 20~30%이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간식 및 특식: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치킨, 짜장면, 피자, 과일, 햄버거, 영양죽 등과 같은 음식류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구매. 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비구매
이·미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 내 염색과 퍼머를 제외한 커트비는 무료 - 시설외부 미용실 및 미장원에서의 염색, 퍼머, 커트나 외부 미용사나 미용사의 초빙 비용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부담. 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 내 커트비용 무료 - 시설 내 초빙된 이·미용사의 이·미용비나 시설외 이·미용실 사용은 실비
수액, 한약 및 기타 의약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급되는 약품을 입소자에게 지급. (비상 상비약은 제외) - <u>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약품구입 후 원내 반입 절대금지</u> 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병원, 한의원 및 약국에서 고시하는 실비로 구매지급
촉탁의 회진비 【입소자부담금】	부담율	20%	12%	8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촉탁의사 진료동의자는 비용별도 부담 (좌측참고) -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무료
	초진	3,760원	2,260원	1,500원	
	재진	2,670원	1,600원	1,060원	
물티슈 및 화장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소 중 기본적인 물티슈는 필요에 따라 지급 - 3일마다 1봉(1롤)이상 대량으로 개인적으로 사용 할 때는 실비로 구매하여 지급. (입원 시 10일까지 물티슈 1봉, 화장지 2롤 시설에서 지급) 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량은 무상증정 - 입소 중이라도 3일에 1봉이상 대량 사용 시 보호자 실비구매
기저귀 및 패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적으로 제공되나 입원 시에는 시설에서 실비로 구매하여 제공하나 10일 초과 입원 시에는 보호자 부담 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원이나 외박 중 10일까지만 제공
보장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여를 원칙.(단 파손 시 전액 배상) - 입소노인이나 보호자의 요구로 구매를 원할 시에 실비로 구매하여 지급. 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료대여 및 실비구매 (단 파손 시 변상)
반입금지 품목	과도, 식칼, 가위, 면도칼, 술, 담배, 라이터, 처방 없는 약품, 과도하게 기름진 음식이나 젓갈류, 반찬류 등의 상하기 쉬운 음식 (한 끼분만 반입가능)				